

# ESG위원회 규정

한온시스템 주식회사

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 (목적)

- ① 이 규정은 한온시스템(이하 "회사")의 정관 제40조의2 제1항 다호 및 이사회 규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ESG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의 구성, 운영,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 2 조 (기능)

위원회는 회사의 경영 전반에 환경, 사회적 책임,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의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회사가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환경(Environment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한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 3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포함하고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### 제 4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


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당해 위원 선임을 위한 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주재한다.

## 제 3 장 회 의

### 제 5 조 (소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으며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 6 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1. ESG 경영 전략 및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2. ESG 중장기 목표 설정
  3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1. ESG 경영 활동 현황 및 성과
  2. ESG 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한 사항
  3. 기업지배구조 및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 ESG 관련 보고서
  4.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

## 제 7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 결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 제 8 조 (결의통지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 제 9 조 (자료제출 요구권 등)

- ① 위원회는 필요시 임직원 및 외부인사에게 위원회 출석, 관련자료의 제출,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## 제 10 조 (간사 또는 집행위원)

-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간사 또는 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.

## 제 11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

## 제 4 장 보 칙

### 제 12 조 (규정의 개폐)

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 부 칙 (2022. 11. 09)

### 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